

	학생상벌규정	규정번호	3-6-8
		제정일자	1982.03.01.
		개정일자	2023.03.01.
		개정차수	12차
		소관부서	학생성공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재학생의 선행 또는 범칙에 관한 상벌 사항을 제정하여 학생생활을 선도함으로써 교풍과 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학칙, 학생준칙 등에 따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의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장 포 상

제4조(포상) ① 총장은 다음 각 호를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상

가. 당해 졸업예정자 중 일반과정 학과별 수석졸업자 1명. 다만, 수석졸업자가 타기관 수상 대상자일 경우 다음 차석졸업자가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신설 2023.03.01.>

나. 당해 졸업예정자 중 일반과정을 제외한 과정별 수석졸업자 1명 <신설 2023.03.01.>

2. 공로상

가. 대학 재학 중 학술연구나 기타 활동으로 학교발전이나 학교 명예선양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

나. 학생활동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당해 졸업예정자

3. 선행상: 교내외를 막론하고 선행이라고 인정될 행동을 한 자

4. 선교상: 교내외 선교 활동에 힘쓴 자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 중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한다.

제3장 징 계

제5조(징계기간) 학칙 제68조에 의한 징계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신: 7일 이내

2. 유기정학: 5 - 14일

3. 무기정학: 15일 이상

제6조(근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근신에 처할 수 있다.

1. 교직원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자

2. 수업태도가 불량하거나 수업을 의식적으로 방해한 자

3. 교내에서 음주를 한 자

4. 학교의 비품이나 시설 및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한 자

5. 광고, 인쇄물 등을 지정장소 이외에 붙이는 자

6. 고사 시 부정행위자(부정행위를 계획했으나 답안작성 전에 발견된 자) 이상 부정 응시로 근신에 처별된 자는 해당과목 당해 시험성적을 무효로 한다.

7. 기타 학생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한 자

제7조(유기정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유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1. 근신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타인에게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한 자
3. 허가하지 않는 교내집회에 참가하여 학사운영을 방해한자
4.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교내질서를 문란 시킨 자
5. 고사시 부정행위를 보여주거나 이를 방조한 자
 - 가. 타인에게 답안을 보여주거나 이를 불러 주는 자
 - 나. 타인의 답안을 보거나 이를 받아쓰는 자
 - 다. 교과서, 참고서, 노트 등을 보고 답안작성을 한 자
 - 라.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이상 부정 응시로 유기정학에 처벌된 자는 해당과목 당해 시험성적을 무효로 한다.
6.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7. 허가 없이 금품을 징수하거나 공금을 유용한 자
8. 단체행사를 교란하는 행동을 한 자
9. 타인의 물품 또는 학교, 공유물을 파손한 자
10. 교내 게시물을 무단제거 또는 오손한 자
11. 「성희롱·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신설 2023.03.01.>
12. 기타 학생의 신분을 망각한 불미한 행위를 한 자

제8조(무기정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무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1. 유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자
3. 교직원에게 반항, 비방 또는 욕되게 한 자
4. 고의로 선동하여 학교질서(학사운영 및 기타)를 문란케 한 자
5. 허가 없이 교내외에서 집회를 주도하여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자
6. 타인 또는 학교물품을 절취 또는 강탈한 자
7. 고의로 학교시설 또는 교구를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이를 외부에 반출한 자
8. 학교의 공고문을 고의로 파손 또는 말소한 자
9. 고사시 부정행위가 극심한 자
 - 가. 사전에 답안을 작성하여 온 자
 - 나. 대리응시를 한 자와 이를 응시케 한 자
 - 다. 시험장 외부에서 답안을 작성하여 투입하거나 또는 이를 방조한 자
 - 라. 답안지를 교환하여 작성한 자
 - 마. 자기가 작성한 답안지에 타 학생의 학번 성명을 기재 한자
 - 바. 감독자의 검인을 위조한 자
 - 사. 기타 위의 각 목에 준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자이상 무기정학에 처벌된 자의 해당과목 성적은 무효로 한다.
10. 허가하지 않은 학생단체를 조직한 자
11. 「성희롱·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신설 2023.03.01.>
12. 기타 학생의 신분으로서 그 행위가 지극히 불미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에 처할 수 있다.

1. 고의로 학교운영을 방해하거나 교직원의 지도에 불응한 자

2.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심한 치상을 하였거나, 흉기를 사용하여 폭행을 가한 자
3. 불미한 행동으로 학교 명예를 심히 훼손시킨 자
4. 학교 내, 외에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선동한 자
5. 수업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목적으로 집단행위를 주도한 자
6. 교직원에게 폭행, 구타 또는 위신을 심히 추락시킨 자
7. 집단으로 등교 거부 및 맹휴를 주도하거나 참가한 자
8. 사직당국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자
9. 제8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고 2개월이 경과하도록 해제되지 않은 자. 다만, 기간산정 방법은 연년통산 방법에 의한다.
10. 재학 중 제8조에 의한 처벌을 2회 이상 받거나 제6조, 제7조에 의한 처벌을 3회 이상 받은 자
11. 「성희롱·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신설 2023.03.01.>
12. 기타 학생의 신분으로서 그 행위가 심히 불미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징계의 심의절차) ①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생성공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1. 사건 경위서
2. 본인의 진술서

②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학생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학생 또는 지도교수의 출석을 요청하여 해명 또는 참고 발언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학생성공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품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징계처분 및 통지) 총장이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징계대상 학생에게 처분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03.01.]

제12조(징계의 재심의) ①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학생은 3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2. 징계처분 결정 후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본조신설 2023.03.01.]

제13조(자격상실) 당해학기 학생회 간부 및 제4조에 해당되는 포상대상자 중 유기정학 이상을 받은 자는 그날부로 자격을 상실하며, 지급된 장학금은 장학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03.01.]

제14조(특별지도 및 권리의 정지) 학칙 및 대학 제규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은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지도를 받고 권리가 정지된다.

1.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지도교수 및 해당과 학과장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2. 근신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이외의 학생자치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3. 근신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되며, 학생의 권리는 학습권(교과, 비교과), 학교시설이용권, 학생자치활동권을 말한다.

제15조(징계의 해제) 지도교수로부터 무기정학중인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결과보고서와 징계

해제에 대한 건의서가 해당과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생성공처장에게 제출되면 학생성공처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다음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징계의 감면, 사면) ① 총장은 징계 대상자 또는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학생활동이 타의 모범이 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면할 수 있다.

제17조(기록)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는 자와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학적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03.01.]

부 칙

① 삭제 <2023.03.01.>

② 삭제 <2023.03.01.>

③ 삭제 <2023.03.01.>

부 칙

이 규정은 198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3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5 년 1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0 년 3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